

[붙임]

## **신입직 필기전형 가점기준(과락점수시 미적용)**

### 법정 및 사회형평적 가점

평가항목	우대가점
공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취업보호대상자 가점 부여(만점의 10% 또는 5%) (단,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합격자 상한제 적용 :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. 단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)</li><li>○ 「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」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(5%)</li><li>○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다문화가족(5%)</li><li>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(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) (5%)</li></ul>

\* 전형별 만점기준

\* 2가지 이상 해당시 중복 적용

### 일반가점

평가항목	우대가점
공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소지자(2%)</li><li>○ 우리공사 체험형인턴 수료자(5%)</li></ul>
지역우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주민등록상 해당 근무지 거주자(공고일 전일 기준) (10%)</li></ul>

\* 필기전형 만점기준

\* 2가지 이상 해당시 중복 적용